2024 Bestlo 헌법 기출총정리(제6판) 정오표 (2023, 8.22 기준)

p300 141문

정답 수정 ③ → ②, ③

해설 ② 수정 [×]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인 점 등을 고려하면,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. 행정 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 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.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'체포 또는 구속'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을 고려하면,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.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 적 요청이므로,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피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 나,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호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하다.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. 그러므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(헌재 2023. 3. 23. 2020헌가1).

p345 214문

정답 수정 ③ → ①, ③

해설 ① 수정 [O]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(현재 2023, 3, 23, 2020헌가1).

p303 147번 설문 오탈자 수정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~ 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~

p487 392번 정답표시 수정

① □ 4

p574 500번 ② 해설 정오표시 수정

 $[\bigcirc] \Leftrightarrow [\times]$

p724 145번 © 해설 마지막 줄 내용 수정

그러나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사직할 수 있다(국회법 제134조 제2항).

p739 165번 ④ 해설 내용 대체

국회의원은 <u>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</u>. 다만, 공익 목적의 명예직,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·위촉되도록 정한 직,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국회법 제29조 제1항).

p755 181번 ② 해설 둘째 줄 내용 수정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지만,~ ⇨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,~

p784 220번 @ 해설 보강(판례 추가)

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'법률'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'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'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. 여기의 '법률'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따라서 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(제76조 제1항) 및 긴급명령(제76조 제2항)은 물론,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(제6조)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고 보이야 한다(헌재 2013,3,21, 2010헌바132등).

p873 340번 ①, ② 해설 내용 수정

- ① [○]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(법원조직법 제41조 제3항).
- ② [○]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(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).

p905 379번 ④ 해설 정오표시 수정